



學校 松岡學園
法人

2021학년도 제9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8인	2인
재적임원	8인	2인

1. 일 시 : 2022년 2월 7일(월) 15:00~16:35 (회의소집 통보일: 2022년 1월 27일)

2. 장 소 : 학교법인 송강학원 이사장실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 임원

- 이사(7인) : 김광아, 서평렬, 김희남, 오장원, 김화진, 박대홍, 이치우
- 감사(1인) : 최규철

○ 결석 임원

- 이사(1인) : 이선재
- 감사(1인) : 국승열

4. 안 건

- 가. 이사장 선임(안) 의결
- 나.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명(안) 의결
- 다.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라.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마.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예산(안) 의결
- 바.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안) 의결
- 사. 광주여자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VISION 2025」(안) 의결

5. 회의내용

학교법인 송강학원의 2021학년도 제9차 이사회를 2022. 2. 7. 15:00에 학교법인 송강학원 이사장실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 진행하다.

간 서 명	김광아	서평렬	김희남	오장원	김화진
	박대홍	이치우	최규철		

사회자는 재적이사 8명중 7명이 참석하여 정관 제28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의장은 2021학년도 제9차 이사회회 개회를 선언하다.

6. 경과보고

의장은 오늘은 이사장으로서 소임을 맡은 지 5년 1개월이 되었다고 말하고 참으로 어려웠던 시간도 많았고 또 우리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대학의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그 무거운 소임을 내려놓고자 한다면서 2022.02.08.자로 이사장과 이사직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그 동안 이사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이사님들과 감사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다. 그리고 오늘 이사회회 의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말하다.

7. 안건심의

가. 의안 제1호 : 이사장 선임(안) 의결

의장은 이사장 선임(안)을 별첨과 같이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사회자는 학교법인 송강학원의 김광아 이사장이 2022.02.08.자로 이사장 및 이사직에 대한 사임원을 제출함에 따라 학교법인 송강학원 정관 제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사 상호간의 호선에 의하여 학교법인 송강학원의 신임 이사장을 선임하고자 이를 이사회에 상정, 의결을 받고자 제안함을 설명하다.

의장은 법인과 대학의 어려운 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책임감 있게 수행하여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다.

서평렬 이사는 광주여자대학교 전임 총장으로서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셨고 또한 이사로서 학교뿐만 아니라 법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서 학교와 법인에 크게 도움을 주시리라 판단되어 오장원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하다.

박대홍 이사는 법인 이사로서 누구보다 책무를 다 하고 계시는 오장원 이사가 이사장으로 선임하는데 찬성하다며 서평렬 이사의 의견에 재청하다.

이치우 이사는 박대홍 이사의 의견에 삼청하다.

의장은 이사들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다.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의장은 이사장 선임(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그리고 새로 선임된 오장원 이사장은 광주여자대학교 총장과 배우자 관계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에 해당되어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다.

간 서 명	김광아	서평렬	김희남	오장원	김희진
	박대홍	이치우	최규철		

별첨 : 의안 제1호 이사장 선임(안) 의결

나. 의안 제2호 :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명(안) 의결

의장은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명(안)을 별첨과 같이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사회자는 안건 제1호 이사장 선임(안) 의결에 따라 정관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장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립학교법 제19조 및 학교법인 송강학원 정관 제24조 제2항에 따라 관할청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 이사장의 궐위(사임)의 사유로 공석이 발생하므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회에 호선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 의결을 받고자 제안함을 설명하다.

의장은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김희남 이사는 이사회에 호선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여 법인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며 선임된 신임 이사장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할청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 전임 이사장이셨던 서평렬 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다.

이치우 이사는 김희남 이사의 의견에 재청하다.

의장은 이사들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다.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의장은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명(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별첨 : 의안 제2호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명(안) 의결

다. 의안 제3호 :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의장은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별첨과 같이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사회자는 2021회계연도 법인일반업무회계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액은 4,509,626천원이었으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증감 없이 4,509,626천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없다면서 관항목별로 예산편성 사유와 산출내역을 설명하다. 그리고 수익사업회계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액은 1,362,041천원이었으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증감 없이 1,362,041천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없다면서 관항목별로 예산편성 사유와 산출내역을 설명하다.

의장은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오장원 이사는 각종 지표에서도 법인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효율

간 서 명	김광아	서평렬	김희남	오장원	김희경
	박대훈	이치우	최규철		

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한다며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하다.
김화진 이사는 오장원 이사의 의견에 재청하다.

의장은 이사들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다.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의장은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별첨 : 의안 제3호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라. 의안 제4호 :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의장은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별첨과 같이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사회자는 설치·경영학교인 광주여자대학교의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액은 25,728,219천원이었으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378,000천원이 증액된 26,106,219천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없다면서 관항목별로 예산편성 사유와 산출내역을 설명하다. 그리고 비등록금회계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액은 20,543,284천원이었으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1,059,467천원이 증액된 21,602,751천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없다면서 관항목별로 예산편성 사유와 산출내역을 또한 설명하다.

의장은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이치우 이사는 대학간 경쟁이 치열하고 학생수 감소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학에서도 자구노력을 하여 줄 것을 주문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하다.

박대홍 이사는 이치우 이사의 의견에 재청하다.

의장은 이사들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다.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의장은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별첨 : 의안 제4호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마. 의안 제5호 :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예산(안) 의결

의장은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예산(안)을 별첨과 같이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사회자는 2022회계연도 법인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대하여 설명하다. 먼저 법인일반업무회계의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509,626천원보다 2,061,962천원이 감액된 2,447,664천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없다면서 관항목별로 예산편성 사유와 산출

간 서 명	김광아	서평원	김희남	오장원	김화진
	김광아	서평원	김희남	오장원	김화진
	박대홍	이치우	최규철		
	박대홍	이치우	최규철		

내역을 설명하다. 그리고 수익사업회계의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362,041천원보다 40,331천원이 증액된 1,402,372천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없다면서 관항목별로 예산편성 사유와 산출내역을 설명하다.

의장은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서평렬 이사는 법인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하다.

김희남 이사는 서평렬 이사의 의견에 재청하다.

의장은 이사들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다.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의장은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별첨 : 의안 제5호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예산(안) 의결

바. 의안 제6호 :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안) 의결

의장은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안)을 별첨과 같이 상정하고 보충설명을 요청하다.

사회자는 설치·경영학교인 광주여자대학교의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의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6,106,219천원보다 1,301,941천원이 감액된 24,804,278천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없다면서 관항목별로 예산편성 사유와 산출내역을 설명하다.

그리고 비등록금회계의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1,602,751천원보다 3,029,314천원이 감액된 18,573,437천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없다면서 관항목별로 예산편성 사유와 산출내역을 설명하다.

의장은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박대홍 이사는 다른 해보다 입학자원의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우리 대학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하다.

오장원 이사는 박대홍 이사의 의견에 재청하다.

의장은 이사들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다.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의장은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별첨 : 의안 제6호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안) 의결

사. 의안 제7호 : 광주여자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VISION 2025」 (안) 의결

의장은 광주여자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VISION 2025」 (안)을 별첨과 같이 상정하고 보

간 서 명	김광아	서평렬	김희남	오장원	김화진
	박대홍	이지우	최규현		

충설명을 요청하다.

사회자는 설치·경영학교인 광주여자대학교에서는 2023년~2025년까지의 정원감축을 포함한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하여 대학 의견수렴과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발전계획 「VISION 2025」를 완성하였기에 이를 달성하고자 이사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제안함을 설명하다.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주무부서장인 정성일 기획처장을 통해 관련 내용을 청취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동의하고, 기획처장이 회의장으로 입장하다.>

정성일 기획처장은 광주여자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VISION 2025」의 주요내용 그리고 추진경과를 구체적으로 추가 설명하다.

김화진 이사는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대학이 보다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전 구성원이 같이 공유하고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하다.

박대홍 이사는 김화진 이사의 의견에 재청하다.

최규철 감사는 중장기발전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해 예산편성 수립에서부터 적극 반영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하다.

의장은 이사들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다.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다.>

의장은 광주여자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VISION 2025」(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별첨 : 의안 제7호 광주여자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VISION 2025」(안) 의결

8. 폐회 선언

의장은 2022. 2. 7. 16:35분에 2021학년도 제9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위 사실을 확인함.

2022. 2. 7.

간 서 명	김광아	서평렬	김희남	오장원	김화진
	박대홍	이치우	최규철		

학교법인 송강학원 이사장

김 광 아

김광아

이 사

서 평 렬

서평렬

이 사

김 희 남

김희남

이 사

오 장 원

오장원

이 사

김 화 진

김화진

이 사

박 대

박대홍

이 사

이 치 우

이치우

감 사

최 규 철

최규철



學 校 松 岡 學 園
法 人

2021학년도 제9차 이사회 안건

1. 일 시 : 2022년 2월 7일(월) 15시 00분

2. 장 소 : 학교법인 송강학원 이사장실

3. 안 건

제 1호 : 이사장 선임(안) 의결

제 2호 :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명(안) 의결

제 3호 :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제 4호 :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제 5호 :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예산(안) 의결

제 6호 :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안) 의결

제 7호 : 광주여자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VISION 2025」(안) 의결

간 서 명	김광아	이선재	서평렬	김희남	오장원
	김화진	박대홍	이지우	최규철	국승열

『의안 제1호』

이사장 선임(안) 의결

□ 의결주문

학교법인 송강학원 이사장 선임(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 제안사유

학교법인 송강학원의 김광아 이사장이 2022.02.08.자로 이사장 및 이사직에 대한 사임원을 제출함에 따라 학교법인 송강학원 정관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제1항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에 의거하여 이사 상호간의 호선에 의하여 학교법인 송강학원의 신임 이사장을 선임하고자 이를 이사회에 상정,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는 것임.

□ 주요골자

1. 이사장(이사) 사임자 인적사항

구분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사임일	비고
사임	이사장	김광아	1941.08.10	2021.07.18. ~2025.07.17	2022.02.08	개방이사

간 서 명	김광아	이선재	서평렬	김희남	오강원
	김화진	박재홍	이치우	최유철	국승열

『의안 제2호』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명(안) 의결

□ 의결주문

학교법인 송강학원의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명(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 제안사유

학교법인 송강학원에서는 안건 제1호 이사장 선임(안) 의결에 따라 정관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제1항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및 제2항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립학교법」 제19조(임원의 직무) 및 학교법인 송강학원 정관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제2항에 따라 관할청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 이사장의 궐위(사임)의 사유로 공석이 발생하므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회에 호선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자 이를 이사회에 상정,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는 것임.

□ 주요골자

1.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명(안) 주요내용

- 가. 이사장 직무대행 사유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의 제한사유에 해당
나. 이사장 직무대행 기간 : 2022. 2. 8. ~ 관할청의 승인시까지

2. 「사립학교법」 관련 조항

제19조(임원의 직무)

-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호선한 다른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우자

간 서 명	김광아	이선재	서명렬	김희남	오장원
	김화진	박대홍	이지우	최규철	국승열

『의안 제3호』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의결주문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 제안사유

학교법인 송강학원의 법인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대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8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상정,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 주요골자

1.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가. 법인일반업무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제2차 추경예산액(A)	제1차 추경예산액(B)	증 감(A-B)	비 고
세 입	4,509,626	4,509,626	0	
세 출	4,509,626	4,509,626	0	

나. 수익사업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제2차 추경예산액(A)	제1차 추경예산액(B)	증 감(A-B)	비 고
세 입	1,362,041	1,362,041	0	
세 출	1,362,041	1,362,041	0	

□ 붙임

1. 2021회계연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간 서 명	김광아	이선제	서평렬	김희남	오장원
	김광아	박대홍	이치우	최규철	국승열

『의안 제4호』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의결주문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 제안사유

학교법인 송강학원 설치·경영학교인 광주여자대학교의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편성하여 이사회에 상정,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 주요골자

1.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제2차 추경예산액(A)	제1차 추경예산액(B)	증 감(A-B)	비 고
등록금회계(a)	26,106,219	25,728,219	378,000	
비등록금회계(b)	21,602,751	20,543,284	1,059,467	
내부거래제거(c)	2	2	0	
합계(a+b-c)	47,708,968	46,271,501	1,437,467	

□ 붙임

1.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간 서 명	김광아	이선재	서평렬	김희남	오광원
	김화진	박대홍	이지우	최규철	국승열

『의안 제5호』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예산(안) 의결

□ 의결주문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 제안사유

학교법인 송강학원의 법인회계에 대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6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상정,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제안하는 것임.

□ 주요골자

1.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예산

가. 법인일반업무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금년도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증 감(A-B)	비 고
세 입	2,447,664	4,509,626	△ 2,061,962	
세 출	2,447,664	4,509,626	△ 2,061,962	

나. 수익사업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금년도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증 감(A-B)	비 고
세 입	1,402,372	1,362,041	40,331	
세 출	1,402,372	1,362,041	40,331	

□ 붙임

1.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자금예산서

간 서 명	김광아	이선재	서평렬	김희남	오장원
	김화진	박대호	이치우	최규철	국승열

『의안 제6호』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안) 의결

□ 의결주문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 제안사유

학교법인 송강학원 설치·경영학교인 광주여자대학교에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6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상정,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제안하는 것임.

□ 주요골자

1.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금년도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증 감(A-B)	비 고
등록금회계(a)	24,804,278	26,106,219	△1,301,941	
비등록금회계(b)	18,573,437	21,602,751	△3,029,314	
내부거래제거(c)	1	2	△1	
합계(a+b-c)	43,377,714	47,708,968	△4,331,254	

□ 붙임

1.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간 서 명	김광아	이선재	서평립	김희남	오장원
	김화진	박대홍	이지훈	최국철	국승열

「의안 제7호」

광주여자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 「VISION 2025」 (안) 의결

□ 의결주문

설치·경영학교인 광주여자대학교의 중장기발전계획 「VISION 2025」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 제안사유

설치·경영학교인 광주여자대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2023년~2025년까지의 정원감축을 포함한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 제출을 요구한 바, 2025년까지의 중장기발전계획이 필요하여 대학 의전수령과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발전계획 「VISION 2025」를 완성하였기에 이 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제안하는 것임.

□ 주요골자

1. 중장기발전계획 「VISION 2025」 주요 내용

가. 3대 핵심전략

⇒ 「VISION 2023」의 핵심전략 중 2가지가 교육영역으로 중복되어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VISION 2025」에서는 핵심전략을 교육혁신, 경영혁신, 특성화로 변경함

나. 전략과제

핵심전략 실현을 위해 9개 전략과제, 26개 세부과제, 71개 실행과제를 선정함

다. 특성화 분야

⇒ 「VISION 2023」의 특성화 분야는 2가지(MAUM교육, Wellness-Beauty)였으나 「VISION 2025」에서는 핵심전략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변경함

- MAUM 활성화
- 지역 상생 Wellness-Beauty 산학협력 강화
- 지역 공동체 기반 성인학습 확대

라. 자율지표

⇒ 「VISION 2023」의 자율지표는 12개였으나 「VISION 2025」에서는 6대 자율지표로 변경하고, 각 지표별로 달성 부서를 명확하게 기재함

간 서 명	김광아	이선재	서평열	김희남	오장원
	김화진	박대홍	이치우	최규철	국승열